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주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66 발의연월일: 2021. 2. 10.

발 의 자:전주혜·지성호·김정재

엄태영 · 한무경 · 박덕흠

김예지 · 서범수 · 김희곤

김태호 · 김미애 · 서병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짐.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행위 불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동학대 범죄의 특징에 비추어 폭행, 감금, 상해,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. 또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보호 및 피해 아동의 수사,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 등을 위하여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를 준용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16조).

### 법률 제 호

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하목 중 "제4조(아동학대치사),"를 "제4조(아동학대살해), 제 4조의2(아동학대치사),"로 한다.

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,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아동학대살해)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(이하 "피해아동등"이라 한다)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, 증거 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

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-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아동학대범죄"란 보호자에	4
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죄를 말한다.	<u>.</u>
가. ~ 파. (생 략)	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
하. 제4조(아동학대치사), 제5	하. <u>제4조(아동학대살해), 제4</u>
조(아동학대중상해) 및 제	<u> 조의2(아동학대치사),</u>
6조(상습범)의 죄	
4의2. ~ 11. (생 략)	4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(아동학대살해) 제2조제4호
	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
	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
	해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
	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제4조(아동학대치사) (생 략)	제4조의2(아동학대치사) (현행 제
	4조와 같음)
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	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
선임의 특례) 아동학대범죄사	선임의 특례) ① 아동학대범죄
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	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
선임 등에 관하여는 「성폭력	(이하 "피해아동등"이라 한다)

법」 제27조를 준용한다. 이 경| 우 "성폭력범죄"는 "아동학대 범죄"로, "형사절차"는 "형사 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 및 아동보호 절차"로, "피해자" 는 "피해아동"으로 본다.

-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 동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도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 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 문, 증거보전절차, 공판준비기 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 거물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 다.
  -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 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 아동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

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
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 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 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 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